

『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11월 15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12월 5일

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유 영 명

나. 제안이유

○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개정(2012.10.22)에
따라 보건진료소에 관한 규정 개정.

다. 주요내용

○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개정(2012. 10. 22)에
따라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둠(안 제11조 및 제12조)
▪ 보건진료원 → 보건진료소장

○ 자구수정

▪ 별표 1의 제목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로 수정(안 별표 1)

라. 참고사항

○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5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성 애

○ 본 조례안은

-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이 2012.10.22.개정, 2013.12.12.시행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개정(2012. 10. 22)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둠(안 제11조 및 제12조)
- 별표 1의 제목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로 수정(안 별표 1)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이 2012.10.22.개정, 2013.12.12.시행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, 상위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